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02
------------	-------

발의연월일 : 2023. 9. 7.

발의자 : 구자근 · 안병길 · 박대수
장동혁 · 김희곤 · 성일종
양향자 · 이주환 · 이종배
박성민 의원(10인)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왔으며 '21년 전국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에 이르는 등 오늘날에도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국가 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인프라와 정주여건 악화로 혁신 역량이 저하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도 정체되고 있어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통해 첨단·신산업 위주의 혁신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현행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대해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면적의 상한인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100분의 30

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특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일부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기보다는 전체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구조고도화 사업 예정지구의 면적 제한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노후거점 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후거점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30 까지 산업 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 제5항 삭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① ~ ④ (생 략)</p> <p><u>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30까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다.</u></p> <p>⑥ (생 략)</p>	<p>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⑥ (현행과 같음)</p>